DBpia

백제의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을 중심으로

The appellation system of Baekje for King and Aristocracy and the fact of a buried person with gilt bronze crown - Mainly concerning Guijang()

저자 (Authors) 노중국
Noh Choong Koo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70, 2013.6, 317-347(31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70, 2013.6, 317-347(3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15956

APA Style 노중국 (2013). 백제의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한국고대사연구, 70, 317-34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1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백제의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歸葬을 중심으로-

노중국*

Ⅰ. 머리말
Ⅱ. 지배방식의 개념 정리
 1. 國연맹 단계 : 貢納 관계
 2. 部體制 단계 : 直接지배+間接지배
 3. 중앙집권체제 단계 : 直接지배
Ⅲ. 중앙세력과 지방세력
 1. 중앙과 지방의 성립
 2. 중앙세력과 지방세력
Ⅳ. 위신품과 歸葬
 1. 威身品과 衣冠制
 2. 歸葬과 그 사례
 3.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 지방출신 중앙귀족 관료
 4. 왕·후호제와 금동관
Ⅴ.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Ⅵ. 맺음말

국문초록

역사 연구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공납 관계는 독자적인 국과 국 사이의 관계로서 힘의 우열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를, 간접지배

*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2010『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 2012『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 2010「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한국고대사연구』59 ; 2011「문헌기록 속의 영산강 유역」『백제학보』6 ; 2012「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 교체와 정책의 변화」『한국고대사연구』66 ; 2012「신라 진흥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순수」『鄕土서울』8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는 部體制 단계에서 部의 장들을 통해 영역의 일부를 다스리는 것을, 직접지배는 중앙집권체제 단계에 와서 지방통치조직이 갖추어지면서 이루어진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방 세력과 지방출신 세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방 세력은 그 지역에 출생하여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그 지역에서 생을 마친다. 지방 세력의 위상은 중앙귀족에 미치지 못한다. 중앙귀족에는 지방 출신 세력도 포함되지만 이들은 지방 세력은 아니다.

위신품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식석상에서 착용하는 것이다. 위신품의 핵심은 관, 옷, 대, 신발과 장식대도이다. 따라서 장신구나 도자기 같은 장식품은 위신품으로 볼 수 없다.

歸葬은 자신의 인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에 묻히는 것을 말한다. 금동관은 고위귀족관료들이 착용한 위신품이다. 금동관을 부장하고 지방에 묻힌 자는 그 지방 출신으로서 중앙귀족으로 활동하다가 귀장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간접지배, 직접지배, 지방통치조직, 부체제, 지방세력, 지방출신 세력, 위신품, 귀장, 중앙집권체제, 공납관계

Ⅰ. 머리말

한국고대사에서 정치사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배방식에 대한 용어와 그 개념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자마다 동일한 용어에 다른 내용을 담아 사용하면 사실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동관을 부장한 피장자는 금동관이 위세품이므로 유력한 지방세력이었고, 백제의 중앙세력은 해당 지역을 직접 지배하지 못하고 이들을 통해 간접 지배하였다”고 하였을 때 사용된 용어는 위세품, 지방세력, 중앙세력, 직접 지배, 간접 지배 등이다.

현재의 연구 상황을 보면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한 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구가 없거나 설혹 개념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 수렴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의견만 제시될 뿐 이를 통섭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필자는 지배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 백제의 정치발전 과정과 연계하여 개념을 정리한 후 그것을 토대로 지배방식의 변화, 중앙 세력과 지방 세력과의 관계, 왕·후호를 가진 자와 금동관을 부장한 피장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두기로 한다. 아울러 위신품과 歸葬의 개념을 통해 지방세력과 지방출신 세력을 정리해두기로 한다. 다만 논지의 전개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질정을 받아 보완할 것이다.

Ⅱ. 지배방식의 개념 정리

1. 國연맹 단계 : 貢納 관계

지배방식과 관련하여 우리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는 貢納관계, 間接지배, 直接지배, 面지배, 線지배, 據點지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용어는 貢納관계, 間接지배, 直接지배이다. 지배방식은 국가발전 단계와 연동된다. 필자는 이전에 한국고대사회에서 국가발전단계를 邑落단계-國단계-國聯盟단계-部體制단계-中央集權的 국가체제단계로 설정하였다.[1]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가발전단계와 연계하여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지배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납관계이다. 공납관계는 조공과 책봉에서 나왔다. 주지하다시피 조공과 책봉은 본래 중국에서 천자와 제후국 사이에 맺어진 관계이다. 이 관계는 제후국이 1년에 한 번씩 천자를 朝覲하면서 方物을 바쳤고, 천자는 그

1) 노중국, 1988『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pp.24~26.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 황제가 賜恩을 내린 형태로 행해졌다. 중국은 이것을 주변 국가와의 사이에까지 확대하여 이웃 나라들이 중국에 와서 외교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조공으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웃 나라의 국왕의 지위를 승인해 주는 것을 책봉이라 하였다.[2)]

그러나 중국과 주변국과의 조공-책봉 관계는 지배-복속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국과 국 사이의 외교관계였다. 즉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나 문화 수준이 낮은 나라가 문화 수준이 높은 강한 나라와의 공존을 위해 貢納을 하는 관계였다. 이때 독립적인 국이란 자신의 국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체를 말한다. 국명이 없어지면 국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과 국의 관계에서는 힘의 우열이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는 자국의 존립을 위해 힘이 강한 나라에 고개를 숙였다. 이를 '臣屬'이라 하였다. 신속한 나라는 강대국에 대해 신속의 표시로 물품을 바치는 등 일정한 성의를 보였다. 이것이 '貢納' 또는 '職貢'이다. 따라서 공납관계는 弱國과 强國이 상호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외교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强國과 弱國 사이에 이루어진 공납관계는 연맹체 단계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연맹체는 지리적 조건이나 경제적 교류, 외적에 대한 공동 방어 등의 목적에서 여러 국들이 모여 결성한 것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국이 연맹체를 대표하는 盟主國이 되었다. 이러한 연맹체의 모습은『삼국지』동이전에 나오는 마한, 진한, 변한연맹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맹체에 참여한 국들은 비록 대국, 소국의 구별은 있었지만 맹주국과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렇지만 연맹에 참여한 이상 이 국들은 맹주국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졌다. 이러한 모습은 마한연맹체의 맹주국과 백제국 사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백제국은 마한의 도움을 받아 건국되었기[3)] 때문에

2) 김한규, 1982『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 일조각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건국 이후 마한연맹체의 일원으로서 맹주국에 대해 일정하게 신속의 예를 표하였다. 온조왕이 神鹿을 잡아 마한에 보낸 것,[4] 漢山으로 천도하면서 천도 사실을 먼저 마한에 고한 것[5] 등이 이를 보여준다. 마한맹주국과 백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이러한 공납관계는 부여와 읍루와의 관계[6], 고구려와 동옥저와의 관계[7] 등에서도 확인된다.

공납관계의 전개 양상은 두 나라 사이의 힘의 강약에 의해 규정되었다. 힘이 강한 맹주국은 약국이 직공을 바치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였다. 읍루가 租賦를 무겁게 統責하는 것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부여가 읍루를 토벌하였다고 한 것이[8] 그 예가 된다. 그러나 맹주국의 힘이 강하지 못할 경우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때로는 맹주국에서 이탈해 나가는 국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공납관계는 어떤 나라가 독자적인 외교권과 내정에 대한 자주권을 가지면서 종주국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지는 의례적 상하 관계와 종주국으로부터 외교와 내정에 상당한 정도의 간섭을 받는 형식으로[9]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납관계는 기본적으로 국과 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관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연맹체 단계에서 맹주국과 연맹

3)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온조왕 23년조.

4)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온조왕 10년조의 "秋九月 王出獵 獲神鹿 以送馬韓" 참조.

5)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온조왕 13년조의 "八月 遣使馬韓 告遷都 遂畫定疆場 北至浿河 南限熊川 東極走壤 西窮大海 九月 立城柵"과 14년조의 "春正月 遷都" 참조.

6)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읍루전의 "自漢以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참조.

7)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동옥저전의 "國小迫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主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賦…" 참조.

8)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부여전의 "自漢以來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참조.

9) 노태돈, 2003 「고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한국고대사연구』 32, 한국고대사학회, pp.8~9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체를 구성한 국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를 공납관계로 파악하는 바이다.[10]

2. 部體制 단계 : 直接지배+間接지배

국연맹체 단계에서 맹주국과 구성국 사이의 관계는 초기에는 수평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맹주국의 힘이 커지면서 수평적 관계는 점차 수직적 관계로 轉化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맹주국은 연맹체를 구성한 국들을 정복하거나 병합하여 영역으로 편입하였다. 병합된 국들은 국명을 상실하였고 그 主帥들 가운데 일부는 중앙의 귀족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중앙귀족으로 전환된 세력들을 재편제한 것이 지배자 집단으로서의 '部'이다. 부가 중심이 된 이 단계의 지배체제를 부체제라고 한다.[11]

부체제 단계에서는 영역 내에 독자적인 국명을 가진 정치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부여와 고구려의 영역 내에 독자적인 국명을 가진 세력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입증된다. 부체제 단계에서 영역 지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삼국지』 부여전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 國有君王 皆六畜以名官 有馬加牛加豬加…使者 邑落有豪民 民下戶皆爲奴僕 諸加別主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12]

이 기사에서 '加'는 '部'의 長이나 部內의 유력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세력의 크기에 따라 '大加', '小加'로 불렸으며 통칭하여 '諸加'라 하였다. 이 제가들은 별도로 '四出道'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사출도는 사방 2천리나 되는

10) 이에 대해서는 노중국, 2011「문헌기록 속의 영산강 유역」『백제학보』6, 백제학회 참조.

11) 노태돈, 1974「삼국시대의 '부'에 관한 연구 -성립과 구조를 중심으로-」『한국사론』2, 서울대 국사학과. 부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한국고대사학회, 2000『한국고대사연구』17(특집 : 한국고대사의 부) 참조.

12)『삼국지』권30, 위서 동이전 부여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부여의 전 영역을 네 방면으로 나눈 것이 아니다. 사출도와는 별도로 국왕의 直轄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왕 직할지의 존재를 상정하는 바이다.

첫째, 부체제 단계에서 국왕은 제가와는 구분되는 상위의 존재였다. 그런데 사출도가 부여 영역의 전체를 가리킨다면 국왕이 관할하는 지역이 없게 된다. 이는 국왕과 제가의 차별을 없애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둘째, '別主'의 의미이다. '별주'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 가운데 이와 구별되는 지역을 주관한다는 의미이다. 기본적이라는 것이 바로 국왕이 관할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사출도는 국왕의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네 방면으로 나눈 것으로, 따라서 부여의 영역은 국왕 직할지와 사출도 지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바이다.

부여의 국왕은 제가보다 그 권한이 컸다. 그래서 국왕은 궁실과 창고와 감옥도 가지고 있었고, 마가, 우가, 저가 등으로 표현되는 관직도 두었다.[13] 따라서 국왕의 직할지는 당연히 사출도보다 넓었다. 국왕은 직할지에서 조세 수취나 노동력 동원 등을 위해 대리인을 파견하였다. 왕이 대리인을 파견하여 직할지를 관장한 것이 직접지배이며, 이렇게 파견된 대리인이 바로 지방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사출도를 별도로 주관[別主]한 제가들은 힘에 優劣이 있었으므로 주관하는 호수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大加는 많으면 수천 家를, 小加는 수백 가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사출도를 관장하는 대가, 소가들은 국왕에게 일정한 의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였다. 이 의무에는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것, 특산물을 비롯한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국왕이 제가를 통해 사출도 지역을 지배한 것이 바로 간접지배이다. 따라서

13)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부여전의 "有宮室倉庫牢獄…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豬加…"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부체제 단계에서 영역 지배는 왕의 직할지에 대한 직접 지배와 제가를 통한 간접지배가 병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의 병존은 이원적인 지배조직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원적인 지배조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고구려의 경우이다. 고구려에서는 왕 아래에 상가-대로-패자-고추가-주부-우태-승-사자-조의-선인으로 이루어진 지배조직이 있었고, 部의 長들인 제가들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휘하에 사자-조의-선인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두었다.[14] 제가들이 둔 이 조직의 명칭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이 조직은 부체제 단계에서 部의 장들이 두었고, 部長이 사출도를 관할할 때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부장 아래에 두어진 이 지배조직을 '部官'으로 부르기로 한다.[15]

제가들은 자신의 부관을 스스로 설치하였다. 이는 부관 조직의 자율성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부장은 부관의 명단을 왕에게 보고하여야 하였고, 또 부관의 지위는 왕 직속의 관리보다 낮았다. 이는 부장이 격이 왕보다 낮았으며 왕의 일정한 통제 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간접지배라는 용어는 부체제 단계에 部의 장들을 통한 영역 지배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간접지배의 실제 내용은 納貢으로 파악하는 바이다.[16]

14)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전의 "諸大加自置使者皂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皂衣先人同列" 참조.

15) '部官'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노중국, 2010「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한국고대사연구』 57, 한국고대사학회 참조.

1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중국, 2011「문헌기록 속의 영산강 유역」『백제학보』 6, 백제학회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3. 중앙집권체제 단계 : 直接지배

1) 지방통치조직(담로제)의 실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단계에 오면 部의 長들은 지배자공동체로서의 성격이 탈각되고 貴族官人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귀족관료들은 신분제에 편제되고 관등체계에 의해 상하 서열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부장의 독자적 지배조직인 部官도 없어졌고 동시에 부관을 통해 지배하던 사출도도 국왕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 그 결과 부체제단계의 직접지배+간접지배 형태는 사라지고 전 영역이 국왕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다.

전 영역을 직접 지배하게 된 국왕은 지방에 대한 지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통치조직을 만들었다. 백제가 만든 최초의 지방통치조직이 이른바 檐魯制이다. 담로는 중국의 군현과 같은 성격의 지방통치조직이었다.[17] 담로제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양서』백제전이 웅진도읍기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입장에서 웅진도읍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18] 그러나 웅진 천도는 황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제 왕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웅진도읍기의 통치조직은 한성도읍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담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시기는 한성도읍기로 올려보아야 한다.[19]

담로제의 실시 시기를 추정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일본서기』인덕기 41년조의 "始分國郡疆場 具錄鄕土所出"[20]이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始分國郡疆場'은 백제가 처음으로 지방통치조직을 체계화한 것을, '俱錄鄕土所出'은 지방통치조직의 편제 목적이 경제적 수취의 확보에 있었음과 동시에

17)『양서』권54, 열전 제48 諸夷 백제전의 "謂邑曰檐魯 如中國之言郡縣也" 참조.

18) 이기백, 1973「백제사상의 무령왕」『무령왕릉』, 문화재관리국, pp.68~69.

19) 노중국, 1988『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pp.240~241.

20)『일본서기』권 제11, 인덕기 41년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지방관 파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기사가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여준다고 할 때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始分'의 시기이다. 이는『일본서기』인덕기의 연대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된다.

인덕기 41년의 연대는 353년(근초고왕 8)이다. 현재 학계에서는『일본서기』의 紀年에 대해 神功紀에서 雄略紀 이전까지는 2周甲 인하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근거로 인덕기 41년의 연대를 2주갑 인하하여 473년(개로왕 19)으로 고쳐 보고 이때에 비로소 지방통치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21] 이 견해를 따르면 백제는 5세기 후반 경에 와서야 지방통치조직을 만든 셈이 된다. 이는 백제의 정치발전 수준을 너무 늦추어 보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필자는『일본서기』인덕기의 기사는 단순한 기년 조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과 연계시켜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제에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된 시기는 근초고왕대이다. 이 왕대에 백제는『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였고, 박사제를 실시하여 유학교육을 장려하였으며,[22] 왜에 박사 왕인을 파견하여『논어』와『천자문』을 전해주었다.[23] 또 근초고왕은 371년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때 정병 3만을 동원하였다.[24] 정병 3만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의 군대를 동원하였다는 것은 중앙집권력이 확립되고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21) 김영심, 1990「5~6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한국사론』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김기섭, 1998「백제 전기의 部에 대한 시론」『백제의 지방통치』, 학연문화사.

22)『삼국사기』권 제24, 백제본기 근초고왕 30년조.

23)『고사기』중권 응신기.

24)『삼국사기』권 제24,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조의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平壤城」, 三國遺事 卷2 南夫餘·前百濟條「南平壤」)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대규모 인력 동원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지방통치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인덕기 41년은 기사는 2주갑 인하하지 않고 353년으로, 이때 근초고왕은 비로소 지방통치조직을 만들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직접 통치를 이루어나간 것으로, 이 지방통치조직의 명칭이 담로제인 것으로 파악하는 바이다. 이렇게 보면 지방통치조직으로서의 담로제의 실시는 근초고왕 2년 이후부터 21년 이전까지 기사가 비어 있는『삼국사기』백제본기의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게 하기도 한다.

2) 도사의 파견과 직접 지배[25]

근초고왕 대에 담로제가 실시되었다고 할 때 이 담로에 파견된 지방관의 명칭을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道使'이다.[26] 도사라는 직명은 삼국 공통으로 보이는데 모두 지방관의 명칭이었다. 고구려의 경우 지방통치 조직인 대성에는 중국의 도독에 비견되는 褥薩이 파견되었고 諸城에는 자사에 비견되는 處閭近支가 파견되었다. 처려근지는 도사라고도 하였으며 治所는 備라고 하였다. 諸小城에는 장사에 비견되는 可羅達이, 성에는 현령에 비견되는 婁肖가 파견되었다.[27]

신라의 도사는 441년에 만들어진 〈포항중성리비〉에[28] 나오는 "奈蘇毒只

25) 도사와 관련한 서술은 노중국, 2012『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pp.140~143의 '지방통치조직과 도사 부분'을 재정리한 것이다.

26) 도사라는 명칭은 부여의 '四出道'의 도와 연관되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도사 명칭의 유래와 사출도의 '道'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천착해 볼 예정이다.

27)『한원』권30, 번이부 고려조 ;『구당서』권199 하 동이열전 고려전.

28) 필자는 〈중성리비〉의 건립 연대를 441년으로 본다(노중국, 2010「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마립간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육부체제의 운영」『한국고대사연구』59). 이와는 달리 501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중성리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포항 중성리신라비』,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한국고대사학회, 2010『한국고대사연구』59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道使”가 가장 빠르다. 이후 504년에 만들어진 〈영일냉수리신라비〉에는 “貪須道使”가, 523년에 만들어진 〈울진봉평리신라비〉에는 “悉支道使”와 “居伐牟羅道使”가 보인다. 실지 도사와 거벌모라 도사는 실지 군주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백제에서 도사의 존재는 『한원』의 “郡縣置道使”[29]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가 보여주는 시기는 사비도읍기이다. ‘郡縣置道使’에 대해 ‘군과 현에는 도사를 두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군의 장관은 郡將 또는 郡令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사는 ‘군의 현, 즉 군 아래의 현에 도사를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0] 즉 도사는 현의 장관 이름이었다.

사비도읍기의 지방통치조직은 방-군-성제이다. 이 방-군-성제는 웅진도읍기의 담로 조직을 분화·격상시켜 만들어졌다. 방과 군이 이때에 만들어졌으므로 방의 장관인 方領과 군의 장관인 郡將(郡令)도 사비도읍기에 만들어진 지방 관명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도사는 방령이나 군장보다 먼저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제에서 도사의 설치시기를 추정하는 데 실마리가 되는 것이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支藥兒食米記’ 목간〉의 제3면에 나오는 道使이다.[31] 이 목간의 제작 시기는 6세기 전반에서 중후반 무렵으로 추정된다.[32] 이 목간에

29) 『한원』 권30, 번이부 백제조.

30) 이종욱, 1977 「백제왕국의 성장-통치체제의 강화와 전제왕권의 성립-」 『대구사학』 12·13합집, 대구사학회 ;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p.257.

31) 〈지약아식미기목간〉 제3면의 “△道使△次如逢小吏豬耳其身者如黑也 道使復△彈耶方 牟氏” 참조.

32) 이 목간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6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박중환, 2002 「부여 능산리발굴 목간 예보」 『한국고대사연구』 28, 한국고대사학회), 동나성 축조가 시작된 527년 무렵으로 보는 견해(近藤浩一, 2004 「부여 능산리 나성축조 목간의 연구」 『백제연구』 39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초기 자연 배수로와 서배수로 사이에 시기 차이가 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보이는 도사는 목간이 제작된 시기에 처음 설치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목간에 기록된 도사의 설치는 사비 천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사비 천도 이전, 즉 웅진도읍기에 설치된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은 담로제였다. 따라서 담로에 파견된 지방관은 도사로 볼 수 있다.

웅진도읍기에 담로에 파견된 지방관이 도사였다는 사실과 근초고왕대에 담로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연결시켜 보면 담로제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 담로에 파견된 지방관도 도사라고 할 수 있다.[33] 이를 방증해 주는 것이 백제의 도사와 신라의 도사 사이의 공통점이다. 두 나라 모두 성(현) 또는 성(촌)에 도사를 파견하였다. 또 도사의 위치는 방-군-성 또는 주-군-성의 3단계로 이루어진 지방통치조직 상에서 하위에 해당된다.[34] 이러한 공통성은 두 나라의 도사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경우 도사는 〈포항중성리비〉에 의할 때 늦어도 441년에는 설치되었다. 이 시기는 백제로서는 한성도읍기에 해당된다. 백제보다도 정치발전 수준이 낮았던 신라가 441년에 이미 도사를 파견하였다면 백제에서도 한성도읍기에 도사를 파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한성도읍기 담로의 장을 도사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근초고왕은 담로제라고 하는 지방통치조직을 만들어 도사를 파견하였고, 이를 통해 전 영역을 직접 지배해 나간 것으로 파악하는 바이다.

지 않다는 입장에서 6세기 중후반 무렵으로 본 견해(이병호, 2007「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의 성격」『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등이 있다.

33) 김수태, 1997「백제의 지방통치와 도사」『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연구총서 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34) 고구려의 경우 도사는 지방통치조직 상에서는 제2위의 지방 관명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Ⅲ. 중앙세력과 지방세력

1. 중앙과 지방의 성립

중앙집권체제는 지방의 성립과 지방에 대한 중앙의 우위를 전제로 한다. 중앙과 구별되는 지방의 성립은 국가발전단계와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국단계에서 국은 국읍과 읍락으로 구성되었다. 국읍은 읍락 가운데 대표적인 읍락이다. 그러나 국읍과 읍락 사이의 우열 관계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국읍 주수는 읍락을 잘 제어하지 못하였다.[35]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국연맹단계는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국이 연맹을 형성한 단계이다. 연맹을 형성한 국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한 국이 연맹체를 대표하는 맹주국이 되었다. 그러나 맹주국과 연맹체를 구성한 국은 비록 힘의 우열이 있었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였다. 따라서 연맹단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구분은 없었다고 하겠다.

부체제단계는 맹주국이 주변의 국들을 병합하고 그 수장의 일부를 중앙의 지배세력으로 편입하면서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주변의 국들을 편입한 맹주국은 중앙이 되고 편입된 지역은 지방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면 중앙과 지방의 구분은 부체제 단계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부체제 단계에서는 영역 내에 독자적인 국명을 가진 별도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방 2천리의 영역과 3만 호로 이루어진 고구려와 방 2천리에 8만 호를 거느린 부여의 영역 내에 독자적인 국명을 가진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에서 확인된다.

중앙집권체제 단계에 오면 권력의 집중화는 보다 강화된다. 부의 장들은

35)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한전의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無跪拜之禮"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독자성을 잃어버리고 왕권 하의 귀족관료로서 존재하였다. 왕은 신분제와 관등제를 통해 이들을 일원적인 체제 속에 편제하고 통제해 나갔다. 이에 따라 부의 장들이 부관을 통해 지배하였던 간접지배 지역도 이제는 국왕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이 확립되었다.

중앙과 지방이 성립되었을 때 중앙의 핵심은 왕도였다. 왕도는 부체제 단계에서 맹주국의 국읍을 토대로 성립하기 시작하였고, 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진 단계에 오면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왕도는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처럼 왕도가 정치와 행정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왕도와 지방은 뚜렷이 구분되었다. 이는 〈울진봉평리신라비〉에서 보듯이 신라가 중앙을 '新羅六部'라 부르면서 왕도에 사는 王京人에게는 경위를, 지방민에게는 외위를 수여하여 이원적으로 관등제를 운영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을 차별화한 것에 의해 입증이 되리라 본다.

2. 중앙세력과 지방세력

중앙과 지방이 구분되면서 중앙 세력과 지방 세력이 나오게 되었다. 중앙세력은 중앙을 무대로 활동하는 세력이고, 지방 세력은 지방에 남은 자들을 말한다. 중앙세력의 형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체제단계의 맹주국의 지배세력이다. 부체제는 맹주국의 국왕이 중심이 되어 성립하였으므로 맹주국에 참여한 지배세력의 상당수는 중앙세력으로 편제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의 세력은 도태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맹주국에 병합된 국의 주수들과 그 휘하의 지배세력 가운데 일부는 중앙세력으로, 나머지는 지방 세력으로 轉化된 경우이다. 그 사례로는 금관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36] 금관국은 국왕 구해가 532년에 신라에 항

36) 『삼국사기』 권 제4, 신라본기 법흥왕 19년(532)조에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位角干."

상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복함으로써 멸망하였다. 구해왕은 왕비 및 세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진골로 편입되어 중앙귀족으로 되었다. 그러나 금관국의 대다수의 왕족은 금관국 지역에 그대로 남았다. 그런데 신라는 이 금관국을 멸망시킨 후 금관군으로 편제하였다. 때문에 구해왕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지 못한 왕족들은 군현민으로 편제되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외위를 받아 재지세력이 되었다.[37]

백제의 경우 지방 세력의 존재 양상을 말할 때 종래의 연구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한 위신품을 부장한 무덤의 주인공에 주목하고 이들을 재지세력 또는 지방 세력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는 이러한 견해에서는 재지세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동관은 재지세력이 착용할 수 없는 위신품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지방 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지방 세력이 단순히 지방출신이라는 의미인지, 지방출신이면서 중앙의 관료로 진출하여 활동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인지, 지방에서 출생하여 지방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다가 지방에 묻힌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필자는 지방 세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 세력은 지방에서만 살다가 무덤에 묻힌 사람을 말한다. 둘째, 지방 세력은 지방에서 토착적인 기반을 가지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중앙의 관직은 가지지 못하였다. 셋째, 지방 세력의 영향력이나 힘은 중앙세력을 능가할 수 없다. 넷째, 지방 세력은 왕을 대행하여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졌다.

37) 이와 비슷한 사례는 236년(신라 조분왕 7) 이전까지 독자적인 국명을 가졌던 골벌국왕 아음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아음부는 서울로 올라가 중앙귀족으로 되었지만 그가 다스렸던 골벌국은 신라의 군으로 편제되었다(『삼국사기』 권 제2, 신라본기 助賁尼師今 7년(236)조의 "春二月 骨伐國王阿音夫 率衆來降 賜第宅·田莊安之 以其地爲郡"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이렇게 보았을 때 지방에서 출신하였지만 중앙의 귀족관료로 편입된 자들은 지방 세력이 아니라 지방출신 중앙귀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금동관을 부장한 피장자는 지방 세력이 아니라 지방출신 중앙귀족으로 파악하는 바이다.

Ⅳ. 王·侯號制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1. 威身品과 衣冠制

신분제 사회에서 한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위신품이다. 威身品의 '威身'은 '권위와 신분'을 의미한다. 전근대사회에서 위신은 개인의 '권위와 지위와 신분'을 보여준다. '品'은 물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品格이나 官品의 品처럼 등급을 나타내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 둘을 종합하면 '위신품'은 '地位·權威와 身分을 보여주는 品格있는 物品'으로 규정할 수 있다.[38]

지위와 신분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상징해주는 위신품도 당연히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적인 성격은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 위신품을 규정해 놓은 제도가 衣冠制이다. 의관은 일정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들이 공식 석상에 참석할 때 착용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위신품의 개념은 "公式席上에 참여하는 귀족 관료들의 지위와 신분의 상하 서열을 보여주는 品格있는 물품"으로, 의관제의 개념은 "귀족 관료들의 지위와 신분의 고하에 맞도록 위신품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정리해 둔다.

귀족관료들은 의관제에 규정된 위신품을 착용하여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때 사용된 위신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당서』

38) 노중국, 2012「백제의 왕·후호, 장군호제와 그 운영」『백제연구』55, 충남대백제연구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백제전과 『삼국사기』 고이왕기에 나오는 왕의 복장에 관한 기사이다. 이에 의하면 왕은 大袖紫袍와 靑錦袴를 입고, 金花飾烏羅冠을 쓰고, 素皮帶를 띠고, 烏革履를 신었다.[39] 이는 왕의 위신품의 핵심이 冠, 官服, 官帶, 신발 등이었음을 보여준다. 環頭粧飾大刀의 경우 비록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상징성에서 미루어 위신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신품의 품목은 귀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 옷이나 몸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된 금제나 은제 및 금동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등 장식품 또는 장신구를 착장형 위신품으로 파악하기도 하고,[40] 중앙에서 제작하여 영역 내의 유력자에게 사여한 복식의 구성품으로 보기도 한다.[41] 또 중국제 도자기 같은 귀중품도 위신품에 포함하기도 한다.[42] 그러나 장신구는 사자의 富를 상징해 주는 것이지만 사자 생시의 공적인 권위와 지위를 나타내주는 위신품은 아니다. 도자기의 경우도 귀중품이고 사치품이지만 의관제에 규정된 위신품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중국제 도자기를 중앙에서 사여한 위신품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바이다.

위신품은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때는 규정된 대로 시행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신분의 위신품을 착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의관제를 정비하여 신분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비록 신라의 경우이지만 흥덕왕이 9년(834)에 내린 교서이다.[43] 이에 의

39) 『구당서』 권199 상 열전 제149 동이 백제전의 "其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참조. 『삼국사기』 권 제24, 백제본기 고이왕 28년조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40) 이희준, 2002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복식품 창작 정형」 『한국고고학보』 47, 한국고고학회.

41)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학연문화사, p.30.

42) 권오영, 1988 「4세기 백제의 지방통제방식 일례 -동물형청자의 유입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하면 位에는 존비가 있고, 名例는 不同하므로 의복 또한 다른 것이 원칙이었지만 민들이 華奢를 좇아 예법에 어긋나게 僭越함에 이르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옛 법을 따라 명령을 분명히 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하였다. 이 기사는 신분과 지위에 따른 의관제가 禮法대로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2. 歸葬과 그 사례

위신품으로 사용된 옷이나 신발 등은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어서 대부분 썩어 없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볼 수 있는 위신품은 金銅冠, 金製나 銀製 冠飾, 金製 또는 金銅製 官帶, 裝飾大刀 등 금속제품이 대다수이다. 백제의 경우 금동관 등 위신품이 나오는 무덤들은 현재까지의 발굴 자료에 의하면 대개는 지방에 있다. 이러한 위신품을 부장한 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지방에 위치한 무덤에 묻혔느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귀장이다. 귀장은 문자 그대로 타향에서 죽은 시신을 운구하여 고향에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죽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고향에 묻혔던 것이다. 한국고대사회에서 귀장이 행해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의해 확인된다.

첫째는 중국에 들어간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에 보이는 귀장이다. 백제 유민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禰氏가문 출신자들의 묘지명을 들 수 있다. 예씨 가문의 묘지명은 禰軍과 禰寔進 형제 및 禰寔進의 아들 禰素斯, 손자 禰仁秀 묘지명 등 모두 4개이다.[44] 예식진은 죽은 곳은 萊州 黃縣이

43) 『삼국사기』 권 제33, 잡지 제3 색복조의 "興德王卽位九年 太和八年 下敎曰 人有上下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寄 却嫌土産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固有常刑"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지만 묻힌 곳은 高陽原이었다.[45] 예소사의 경우 죽은 곳은 徐州의 관사였지만 묻힌 곳은 邕州 고양원이었다.[46] 예인수는 죽은 곳은 聲氏의 別業이었지만 묻힌 곳은 長安縣 고양원이었다.[47] 예식진의 형인 예군의 경우 죽은 곳은 옹주 장안현의 연수리 집이었지만 묻힌 곳은 옹주 건봉현 고양리였다.[48] 3대에 걸쳐 확인된 네 사람은 죽은 곳은 다르지만 묻힌 곳은 공통으로 고양리(고양원)이었다.

고구려 유민의 경우 泉男生과 그의 아들 泉獻誠, 손자 泉毖에 이르기까지 3대의 묘지명이 보여주는 귀장이다. 연개소문의 아들인 천남생은 안동부의 관사에서 죽었지만 묻힌 곳은 낙양 邙山이었다.[49] 천헌성의 경우 모함에 걸려 죽었는데 묻히기는 망산의 舊塋이었다.[50] 천비의 경우 경조부 흥녕리 사

44) 이 묘지명에 대한 소개는 권덕영, 2012「백제유민 예씨 일족 묘지명에 대한 단상」『사학연구』105, 한국사학회 및 김영관, 2012「중국발련 백제유민 예씨가족 묘지명 검토」『신라사학』, 신라사학회 참조.

45) 〈예식진묘지명〉의 "咸亨三年五月廿五日 因行薨於來州黃縣春秋五十有八 恩加詔葬禮洽飾終以其年十一月廿一日 葬於高陽原" 참조.

46) 〈예소사묘지명〉의 "景龍二年八月廿九日卒於徐州之官舍嗚呼哀哉即以其年十一月二日遷窆於雍州高陽原禮也" 참조.

47) 〈예인수묘지명〉의 "廿七年十一月六日卒于聲氏之別業春秋六十一離殯客土星歲再周越以天寶載庚寅夏五月戊子朔廿二日己酉克葬于長安縣之高陽原禮也" 참조.

48) 〈예군묘지명〉의 "儀鳳三年歲在戊寅二月朔戊子十九日景午遘疾薨於雍州長安縣之延壽里第 春秋六十有六 皇情念功惟舊傷悼者久之贈絹布三百段粟三百升葬事所須並領官給仍使弘文館學士兼檢校本衛長史王行本監護惟公雅識 淹通溫儀韶峻明珠不類白珪無玷十步之芳蘭室欽其臭味四隣之彩推嶺 尙其榮華奄墮扶搖之翼遽輟連春之景奧以其年十月甲申朔二日乙酉葬於雍州乾封縣之高陽里禮" 참조.

49) 〈천남생묘지명〉의 "以儀鳳四年正月廿九日 遘疾薨於安東府之官舍 春秋冊六…所司備禮…以調露元年十二月廿六日壬申 窆於洛陽邙山之原 禮也" 참조.

50) 〈천헌성묘지명〉의 "天授元年九月 除授左威大將軍…會逆賊來俊臣 秉弄刑獄 恃搖威勢 乃密於公處 求金帛寶物 公惡以賄 交杜而不許 因誣陷他罪 卒以非命 春秋冊二…奧以大足元年歲次辛丑二月甲子朔 十七日庚申 葬於邙山之舊塋 禮也"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저에서 죽었지만 묻히기는 망산 구영이었다.[51] 祖-子-孫이 모두 망산 구영에 묻힌 것이다. 이외에 백제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이 죽기는 사저에서 죽었지만 북망 청선리에 묻힌 것과[52] 고구려 유민 高慈가 마미성 남쪽에서 죽었지만 낙주 합궁현 평낙향의 언덕에 묻힌 것도[53]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이처럼 중국에 들어간 백제의 예씨 가문과 고구려의 연씨 가문 출신자들은 삼대에 걸쳐 죽은 곳은 달라도 같은 곳에 묻히고 있다. 또 고구려의 고씨, 백제의 부여씨 출신자들도 모두 죽은 곳과 묻힌 곳은 달랐다. 이들이 묻힌 곳은 바로 이들의 인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이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인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에 묻히는 귀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삼국사기』에 보이는 귀장의 사례이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고구려 대무신왕대의 怪由이다. 그는 北溟人으로 나오므로 북명 출신자라 할 수 있다. 북명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신라 남해왕대에 북명인이 밭을 갈다가 濊王印을 얻어 바쳤다는 기사와[54] 오늘날 강릉의 옛 이름인 溟州가[55] 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등에서 비추어 볼 때 강릉으로 볼 수 있다. 괴유는 대무신왕이 5년(서기 22) 2월에 북부여를 공격할 때 帶素王의

51) 〈천비묘지명〉의 "奧以開元十七年 歲次己巳九月四日 終於京兆府興寧里之私第 春秋二十有二 以開元卄一年 歲次癸酉十月甲午朔十六日己酉 遷措於河南府洛陽縣之印山舊營 禮也" 참조.

52) 〈부여융묘지명〉의 "春秋六十有八 薨于私第…以永淳元年歲次壬午十二月庚寅朔卄四日癸酉 葬于北芒淸善里 禮也" 참조.

53) 〈고자묘지명〉의 "以萬歲通天二年五月卄三日 終於磨米城南 春秋卅有三…以聖曆三年臘月十七日 窆於洛州合宮縣平樂鄕之原 禮也" 참조.

54)『삼국사기』권 제1, 신라본기 남해차차웅 16년조의 "春二月 北溟人耕田 得濊王印獻之" 참조.

55)『삼국사기』권 제35, 잡지 제4 지리2 溟州조의 "賈耽古今郡國志云 今新羅北界溟州 蓋濊之古國"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목을 베는 공을 세웠다. 괴유가 그해 10월에 병들자 왕이 친히 문병을 하였다. 이는 그가 왕도 내에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죽었을 때 그는 北溟山陽에 묻혔다.[56] 괴유가 왕도가 아닌 자신의 출신지인 북명, 즉 강릉에 묻힌 것은 귀장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고구려 명림답부의 경우이다. 명림답부는 선비족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고,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坐原과 質山을 식읍으로 받았다. 이로써 질산은 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왕은 예를 갖추어 그를 질산에 묻었다.[57] 이처럼 식읍지에 무덤을 만드는 것도 귀장이라 하겠다.

이외에 전장에서 죽었을 때 시신을 고향에 묻는 것도 귀장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온달은 阿旦城 아래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지만 그의 시신은 그의 고향으로 옮겨졌다.[58] 신라 귀산은 백제군과 싸우다가 퇴각하는 길에 죽었는데 왕은 阿那之野까지 가서 그의 시신을 영접한 후 예로써 장례지내 주었다.[59] 그가 묻힌 곳은 퇴각하다 죽은 곳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곳이다. 이것

56) 『삼국사기』 권 제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4년조의 "冬十二月 王出師伐扶餘 次沸流水上…上道有一人 身長九尺許 面白而目有光 拜王曰 臣是北溟人怪由 竊聞大王北伐扶餘 臣請從行 取扶餘王頭 王悅許之"와 5년조의 "春二月 王進軍於扶餘國南 其地多泥塗…王於是揮怪由 怪由拔劍號吼擊之 萬軍披靡 不能支 直進執扶餘王斬頭…冬十月 怪由卒 初疾革 王親臨存問 怪由言 臣北溟微賤之人 屢蒙厚恩 雖死猶生 不敢忘報 王善其言 又以有大功勞 葬於北溟山陽 命有司以時祀之" 참조.

57) 『삼국사기』 권 제45, 열전 제5 明臨荅夫전의 "明臨荅夫 高句麗人也 新大王時 爲國相…荅夫帥師數千騎追之 戰於坐原 漢軍大敗 匹馬不反 王大悅 賜荅夫坐原及質山爲食邑 十五年秋九月卒 年百十三歲 王自臨慟 罷朝七日 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참조.

58) 『삼국사기』 권 제45, 열전 제5 온달전의 "及嬰陽王卽位 溫達奏曰 惟新羅 割我漢北之地 爲郡縣 百姓痛恨 未嘗忘父母之國 願大王不以愚不肖 授之以兵 一往必還吾地 王許焉 臨行誓曰 鷄立峴·竹嶺已西 不歸於我 則不返也 遂行 與羅軍戰於阿旦城之下 爲流矢所中 踣而死 欲葬 柩不肯動 公主來撫棺曰 死生決矣 於乎歸矣 遂擧而窆 大王聞之悲慟"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도 귀장인 것이다.

당에 들어간 백제와 고구려 유민의 경우와『삼국사기』등의 자료에서 미루어 볼 때 백제에서도 귀장이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백제의 귀족들도 중앙 관료로서, 또는 지방관으로 활동하다가 죽어서는 자신의 인적 물적 기반이 있던 곳에 묻히기도 하였던 것이다. 인적 물적 기반이 있는 곳은 자신의 출신지가 대다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식읍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백제에도 귀장이 행해졌다고 보는 바이다.

3.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 지방출신 중앙귀족 관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에서도 귀장이 행해졌다고 하면 이 귀장과 금동관 등 위신품을 부장한 무덤의 주인공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신품은 왕권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일정하게 받은 자들이 착용한 것이다. 대표적인 위신품이 관, 의복, 관대, 신발, 장식대도 등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동관은 수도 한성 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지방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각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주인공을 지방에서 상당한 자치력을 갖고 있는 유력한 지방 세력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지배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금제 영락은 금관의 장식에 단 步搖였을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왕도에서도 금관이나 금동관을 착용한 자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60] 이는 한성에서도 금관이나 금동관이 확

59)『삼국사기』권 제45, 열전 제5 귀산전의 "貴山 沙梁部人也 父武殷阿干 貴山少與部人箒項爲友…貴山大言曰 吾嘗聞之師曰 士當軍無退 豈敢奔北乎 擊殺賊數十人 以己馬出父 與箒項揮戈力鬪 諸軍見之奮擊 橫尸滿野 匹馬隻輪 無反者 貴山等金瘡滿身 半路而卒 王與羣臣 迎於阿那之野 臨尸痛哭 以禮殯葬 追賜位貴山奈麻 箒項大舍" 참조.

60) 이귀영, 2012「백제 관 상징체계의 변천양상」『백제문화』4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인될 가능성을 높게 한다. 그렇다고 하면 금동관 피장자를 지방 세력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금동관이나 장식대도를 부장한 주인공을 지방 세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방출신의 중앙관료로 볼 것이냐는 점이다. 필자는 앞에서 지방 세력은 지방에 토착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 지방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지방에서만 살다가 무덤에 묻힌 사람을 말하며, 해당 지방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세력을 능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금동관을 부장한 피장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들이 생시에 어디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이를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금동관은 의관제에서는 중앙의 고위 귀족관료들이 착용할 수 있는 위신품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금동관을 부장한 자는 귀족관료로서 관직을 받아 복무하거나, 귀족회의체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생시에 금동관이나 장식대도와 같은 위신품을 착용하였던 인물이 왜 죽어서 지방에 무덤을 만들었느냐 하는 점이다. 귀족관료로서 활동하던 인물이 죽었을 때 묻히는 곳은 둘 중의 하나이다. 하나는 왕도나 왕도 인근에 무덤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왕도에 일정한 경제적, 인적 기반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출신지에 묻히는 것이다. 출신지는 사자의 경제적 기반이나 인적 기반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방에 위치한 무덤에 금동관을 부장한 인물은 생시에는 중앙귀족으로서 활동하면서 금동관을 착용할 정도의 지위를 가졌으며, 죽어서 자신의 고향에 와서 묻힌 인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금동관 부장자는 지방 세력이 아니라 그 지방 출신 세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천안 용원리, 공주 수촌리, 서산 부장리, 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고흥 길두리에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서 출토된 금동관의 주인공은 이 지역 출신자로서 중앙에 진출하여 고위 귀족으로 활동하다가 죽어서 자신의 인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에 묻힌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지방에 위치한 무덤에 금동관을 부장한 피장자는 담로의 장도, 지방 세력도 아니라 그 지방 출신 세력으로서 중앙의 귀족 관료로서 활동한 인물이며, 부장된 금동관 등은 그가 생시에 누렸던 정치적 지위를 보여주는 위신품으로 파악하는 바이다.

4. 왕·후호제와 금동관

금동관이나 장식대도 등 위신품을 부장한 자들이 백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왕·후호와 장군호이다. 백제의 왕·후호제와 장군호제는 개로왕이 4년(458)에 송에 정식 제정을 요청는 좌현왕, 우현왕의 왕호와 冠軍將軍, 征虜將軍, 輔國將軍, 龍驤將軍, 寧朔將軍, 建武將軍 등의 장군호[61] 및 동성왕이 남제에 정식 제정을 요청한 面中王 都漢王 阿錯王 邁盧王 邁羅王 辟中王 등의 왕호와 八中侯 弗斯侯 弗中侯 面中侯 후호 및 寧朔將軍 冠軍將軍 都將軍 建威將軍 龍驤將軍 廣武將軍 宣威將軍廣武將軍 征虜將軍 安國將軍 武威將軍 廣威將軍 振武將軍 등의 장군호 등에서[62] 확인된다. 이 왕·후호제와 장군호제는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백제 제도의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왕·후호와 장군호는 작호였다. 이 작호제의 운영은 백제왕이 먼저 신하들에게 수여한 후 중국 왕조로부터 정식으로 제수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백제왕이 먼저 임명한 것을 私署 또는 私假라 하였고, 중국 왕조가 이를 승인해 주는 것을 除正 또는 除授라 하였다. 사서한 작호에는 '行'자를 붙

61) 『송서』 권97, 열전 제57 夷蠻 百濟傳.

62) 『남제서』 권58, 열전 제39 東南夷 백제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였고 중국 왕조가 제수하면 行자를 떼었다.

작호를 받은 자들은 改封되기도 하고, 昇進하기도 하였다. 姐瑾이 寧朔將軍 面中王→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으로, 餘古가 建威將軍 八中侯→行寧朔將軍 阿錯王으로, 여력이 建威將軍→行龍驤將軍 邁盧王으로, 餘固가 廣武將軍→建威將軍 弗斯侯로 승진하거나 새로운 왕·후호를 받은 것이 그 사례가 된다. 또 왕·후, 장군호는 458년의 기사, 472년의 기사, 485년 이전의 기사, 490년의 기사, 495년의 기사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가 왕·후호제를 제도의 하나로 운영하였음을 보여준다.[63]

왕·후, 장군은 백제의 유력한 귀족들이 받은 작호이다. 작호를 받은 이들은 그 작호의 지위와 권위에 걸맞는 위신품을 받거나 착용하게 된다. 그러한 위신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금동관과 장식대도이다. 금동관과 장식대도는 중앙의 고위귀족에게 걸 맞는 위신품이므로 왕·후호제 및 장군호제와 연관시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방증해 주는 것이 무령왕릉 출토 부장품이다.

무령왕릉묘지석에 의하면 무령왕의 생시의 지위는 寧東大將軍百濟王이었다. 영동대장군은 武的인 성격의 작호이다. 따라서 무령왕릉 부장품 가운데 영동대장군을 상징하는 위신품은 금동용문환두대도이다. 그렇다면 백제왕을 상징하는 부장품은 금제관식으로 장식한 관이라 할 수 있다.[64]

금동관이 출토된 곳은 천안 용원리, 공주 수촌리, 서산 부장리, 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고흥 길두리 등이다.[65] 이 금동관은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말엽 내지 6세기 초반까지 사용된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66] 한편 귀족들

63) 이상의 설명에 대해서는 노중국, 2012「백제의 왕·후호, 장군호제와 그 운영」『백제연구』5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참조.

64) 노중국, 2012「무령왕대 백제의 동아시아 상에서의 위상」『백제문화』4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65)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관의 사진은 국립공주박물관, 2011『백제의 관』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이 받은 왕·후호도 4세기 중반 이후 6세기 전반까지의 기록에 나온다. 이처럼 금동관이 만들어진 시기와 왕·후호제가 실시된 시기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금동관을 왕·후호를 받은 귀족관료들의 위신품으로 보는 것은[67]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의 각 지역에서 금동관이 출토된 무덤의 피장자는 왕·후호를 받은 자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금동관을 부장한 무덤의 피장자는 지방 세력이나 토착 세력이 아니라 그 무덤이 위치한 지역의 출신자로서 생시에 중앙귀족으로 활동하면서 왕호나 후호를 받은 자였으며, 죽어서 자신의 기반이 있는 곳에 묻힌 자로 파악하는 바이다.

Ⅵ. 맺음말

역사 연구에서 핵심 중의 하나는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지배와 관련한 용어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공납관계, 간접지배, 직접지배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공납관계는 독자적인 국과 국 사이의 힘의 우열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로서 국연맹 단계에 해당된다. 간접지배는 부체제 단계에서 부의 장들을 통해 영역의 일부가 다스려진 것을 말한다. 직접지배는 중앙집권체제 단계에 와서 지방통치조직이 갖추어지고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이루어진 지배를 말한다.

중앙과 지방이 성립되는 단초는 부체제 단계에 와서부터이다. 그리고 중

66) 이남석, 2008「백제의 관모, 관식과 지방통치체제」『한국사학보』33, 고려사학회 ; 이훈, 2010「금동관을 통해본 4~5세기 백제의 지방통치」,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7) 이에 대해서는 문안식, 2006「백제의 왕, 후제 시행과 지방통치방식의 변화」『역사학연구』27, 호남사학회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중앙세력과 지방세력이 형성되었다. 중앙세력은 왕실을 중심으로 하여 이전의 국의 수장의 일부가 참여하였다. 지방세력은 중앙귀족이 되지 못한 국의 유력자들이 轉化된 것이다. 지방세력과 지방출신 세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중앙세력에는 지방출신 세력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방 세력은 그 지역에 출생하여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그 지역에서 생을 마치므로 그들의 위상은 중앙세력에 미치지 못한다.

위신품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식석상에서 착용하는 것이다. 위신품의 위신은 권위와 신분을 말하고, 품은 품격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 위신품의 핵심은 관, 옷, 대, 신발과 장식대도이다. 따라서 장신구나 도자기 같은 귀중품은 사치품이나 장식품일 수는 있어도 위신품으로 볼 수 없다.

귀장은 자신의 인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에 묻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후에도 제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귀장의 사례로는 당나라에 들어가 예씨 가문이 3대에 걸쳐 죽은 곳은 달라도 묻힌 곳은 같다고 한 기록과 고구려 북명인 괴유가 왕도에서 살다가 죽어서 북명에 묻힌 것 등에서 확인된다.

금동관은 위신품이다. 이러한 금동관을 부장한 무덤들은 현재까지는 지방에서 출토되고 있다. 금동관은 고위 귀족관료들이 착용하는 것이므로 금동관 부장자를 지방 세력 또는 재지 세력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지방출신으로서 왕호나 후호를 받아 중앙에서 활동하였고 거기에 걸맞는 위신품으로서 금동관을 착용하였으며, 죽어서 금동관을 부장하였던 것이다.

투고일 : 2013. 4. 9 심사개시일 : 2013. 5. 22 심사완료일 : 2013. 6. 5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참고문헌

〈기본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지』, 『송서』, 『남제서』, 『양서』, 『한원』, 『구당서』, 『고사기』, 『일본서기』

〈도록〉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국립공주박물관, 2011 『백제의 관』

〈저서〉
김한규, 1982 『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 일조각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한국고대사학회, 2000 『한국고대사연구』 17(특집 : 한국고대사의 부)
한국고대사학회, 2010 『한국고대사연구』 59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포항 중성리신라비』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학연문화사

〈논문〉
이기백, 1973 「백제사상의 무령왕」 『무령왕릉』, 문화재관리국
노태돈, 1974 「삼국시대의 '부'에 관한 연구 −성립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2, 서울대 국사학과
노태돈, 2003 「고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한국고대사연구』 32, 한국고대사학회
이종욱, 1977 「백제왕국의 성장 −통치체제의 강화와 전제왕권의 성립−」 『대구사학』 12·13합집, 대구사학회
권오영, 1988 「4세기 백제의 지방통제방식 일례 −동물형청자의 유입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8, 서울대 국사학과
김영심, 1990 「5~6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한국사론』 22, 서울대 국사학과
김수태, 1997 「백제의 지방통치와 도사」 『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연구총서 5』, 충남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대 백제연구소
김기섭, 1998「백제 전기의 部에 대한 시론」『백제의 지방통치』, 학연문화사
박중환, 2002「부여 능산리발굴 목간 예보」『한국고대사연구』 28, 한국고대사학회
이희준, 2002「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복식품 창작 정형」『한국고고학보』 47, 한국고고학회
문안식, 2006「백제의 왕, 후제 시행과 지방통치방식의 변화」『역사학연구』 27, 호남사학회
이병호, 2007「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의 성격」『한국고대목간과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문화교류』, 한국목간학회
이남석, 2008「백제의 관모, 관식과 지방통치체제」『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이훈, 2010「금동관을 통해본 4~5세기 백제의 지방통치」,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노중국, 2010「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麻立干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六部체제의 운영」『한국고대사연구』 57, 한국고대사학회
노중국, 2011「문헌기록 속의 영산강 유역」『백제학보』 6, 백제학회
노중국, 2012「백제의 왕·후호, 장군호제와 그 운영」『백제연구』 55, 충남대 백제연구소
노중국, 2012「무령왕대 백제의 동아시아 상에서의 위상」『백제문화』 46,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권덕영, 2012「백제유민 예씨 일족 묘지명에 대한 단상」『사학연구』 105, 한국사학회
김영관, 2012「중국발련 백제유민 예씨가족 묘지명 검토」『신라사학』, 신라사학회
이귀영, 2012「백제 관 상징체계의 변천양상」『백제문화』 46,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近藤浩一, 2004「부여 능산리 나성축조 목간의 연구」『백제연구』 39, 충남대 백제연구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

Abstract

The appellation system of Baekje for King and Aristocracy
and the fact of a buried person with gilt bronze crown
- Mainly concerning Guijang(歸葬) -

Noh Choong Kook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of historical research is the use of exact and correct words. Tributary relation is a relationship between two independent countries and it is established by the power superiority. Indirect rule is a way to rule parts of the territory by the chiefs of the Bu(部) on the stage of the Bu system. Direct rule is a ruling system accompany with local governing structure on the stage of the centralized system.

In the centralized system, local influential people and influential people from the local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Local influential people are usually born, work and end their lives in the local region. The status of local influential people is usually lower than Central aristocracy.

Prestige goods are for formal meetings or public appearances to show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us of person. Prestige goods include hats, clothing, belts and decorated long swords, but not ornaments such as accessories or porcelains.

Guijang is burial that a person died in another region is sent to his native place with his personal and economic base and buried there. Gilt bronze crown is a prestige good for top aristocrats. One buried with gilt bronze crown in the local region is assumed as a person who was a central aristocrat from the local region and was sent back for Guijang.

Key words : Indirect rule, direct rule, local governing structure, Bu system, local influential people, prestige goods, centralized system, tributary relation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19 14:12(KST)